



의안번호	제 2008 - 11 호
의 결 연 월 일	2008. 7. 8. (제9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토론회 결과보고	1
1. 토론회 개요	1
2. 토론회 의미	1
3. 토론회 논제	2
4. 토론회 참가자	2
5. 진행 일정	3
6. 세부 결과보고	3
II.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4
1. 개요	4
2. 필요성	4
3. 조사 대상	4
4. 조사 절차	5
5. 조사 일정	7
III. 미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8
1. 개요	8
2. 조사 현황	8
IV. 전문위원 업무 지원	10
1. 전문위원 회의 지원	10
2. 전문위원 분석업무 지원	10

V. 전문위원 위촉계획 11

1. 개요 11

2. 위촉계획 12

- 별지 범죄유형별 죄명표
-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



I.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토론회 결과 보고

1. 토론회 개요

- 명칭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08. 6. 16. 14:00 ~ 19:00
- 장소 :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 참석 : 양형위원회 위원 11명, 전문위원 9명, 법관 21명, 검사 9명,
기자 20명 포함 총 125명

2. 토론회 의미

가.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

- 양형위원회는 최초 양형기준의 기본 틀이 되는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 양형정책의 근간이 될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안건을 심의 중
- 그간의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토대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 토론회 결과는 위원회 심의과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나. 공개적이고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 종국적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

3. 토론회 논제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주요 쟁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
 - 양형기준의 설정 순서

4. 토론회 참가자

가. 사회자

- 성낙송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나. 주제발표자

- 손철우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 이주형 검사(창원지방검찰청)
-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이상, 위원회 전문위원)

다. 토론자

- 김현철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원)
-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참여연대)
- 신주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이명건 기자(동아일보)
- 이현중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5. 진행 일정

- 13:30 ~ 14:00 참가자 등록
- 14:00 ~ 14:20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양형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 14:20 ~ 15:50 주제발표
- 15:50 ~ 16:10 휴식
- 16:10 ~ 18:50 지정토론, 자유토론 및 방청객 질의
- 18:50 ~ 19:00 마무리 및 폐회

6. 세부 결과보고

- 별첨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2008. 6. 16. 공개토론회
결과보고” 기재와 같음

II.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1. 개요

- 2007. 8. 20.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판결전 조사보고서 제출 요청의 건’(의안번호 제2007-7호)이 의결됨
- 이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2007. 10. 23.경 5,866건의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음
 - 2004년 1,638건, 2005년 1,790건, 2006년 1,430건, 2007년 1,008건
-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이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던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하기로 함

2. 필요성

- 판결전 조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환경, 성장배경 및 범행관련 요인들이 심층적으로 조사되어 있어 이를 통해 풍부한 양형자료를 조사할 수 있음
-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 법원의 양형실태를 파악하고 양형에 미치는 인자를 추출해 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3. 조사 대상

-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별지1.> 범죄유형별 죄명표 기재와 같은 31개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정
 - ⇒ 위 범죄유형에 속하지 않는 291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항소심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 등으로 종결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판결문 검색이 곤란한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제외
⇒ 751건이 이에 해당
- 수집된 총 5,866건 중 위와 같은 사건 수를 제외한 나머지 4,824건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 시행

4. 조사 절차

가. 판결문 출력

- 운영지원단에서 판결문 출력 후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법원별로 분류하고, 사건목록에 법원명을 입력한 다음 판결전 조사보고서, 판결문 등을 각급 법원 분석관에게 송부
 -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사건번호는 있으나 법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나 범죄발생지 등을 단서로 해당 사건을 검색한 후 판결문을 출력하도록 조치

나. 조사

(1) 조사자

- 양형자료분석관 15명
- 자료조사과 신정섭 계장 (이상, 총 16명)

(2) 조사 방법

-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평균 10장 내외)과 판결문을 충실히 대조·검토한 후 조사표를 작성
-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기존의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였음

- ▶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판결전 조사보고서상의 피고인에 대하여만 조사
- ▶ 사건 검색을 통해 공소제기일, 구속여부, 항소여부 등을 확인한 후 조사표를 작성
- ▶ 경합범 처리방식
 - 단일범의 경우는 별지 31개 범죄유형에 대하여만 조사
 - 경합범은 대표범죄가 별지 31개 범죄유형에 해당할 경우만 조사
- ▶ 결합범 처리방식
 - 결합범은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이 있음
 - 이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뉨
 - ①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인자가 별도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각 조사표를 모두 작성
 - ② 하나의 조사표에 각 구성요건의 양형인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하나의 조사표만을 작성
 - 예컨대, 강도강간에 대하여는 강도죄(16호 양식)와 성범죄(3호 양식)에 대한 조사표를 모두 작성하며, 강도살인의 경우는 강도죄의 조사표만을, 강간살인의 경우는 성범죄의 조사표만을 작성함
- ▶ 기록을 검토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
 - 피고인 신병은 불구속, 구속으로만 구분하여 기재
 - 기소형태에서 구약식의 경우 재판의 유형은 삭제
 - 기록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구형량, 자백의 시기는 기재 안 함
 - 자수·자복 여부, 자백 여부는 판결문에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다. 입력 및 분석

- 조사 완료 후, 입력을 위해 1주 단위로 작성한 조사표를 판결전 조사보고서와 함께 지원단으로 송부
- 운영지원단에서 입력요원(8명)을 활용하여 입력 실시
- 입력 완료 후 운영지원단 통계분석과에서 분석을 시행할 예정

5. 조사 일정

일 자	내 용
5. 19. ~ 5. 21.	판결문 출력
5. 22.	법원별 분류, 조사서 송부
5. 26. ~ 6. 24.	조 사
6. 16. ~ 7. 15.	입 력
7. 16. ~ 8. 14.	분 석

III. 미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1. 개요

- 2008. 5. 1. ~ 5. 22.까지 각급 법원의 양형 자료분석관은 미확정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진행
- 위 기간 이후로는 각급 법원 분석관들이 판결전 조사보고서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업무에 착수하여 미확정사건에 대한 자료조사는 잠정적으로 중단

2. 조사 현황

(단위: 건, 기간 : 2008. 5. 1. ~ 2008. 5. 22.)

법원		죄명별조사건수						계	누계
		살인	성폭력	뇌물	마약	교특	특가 (도주)		
서울고등	합의	6	15	1	1		1	24	206
서울중앙1	합의		3	1				4	79
	단독		1		5	9	3	18	179
서울중앙2	합의	1	1	1				3	82
	단독		2		5	4	9	20	184
서울동부	합의		7					7	22
	단독			1	3	8	3	15	94
서울남부	합의	2	7					9	74
	단독				6	18	17	41	227
서울북부	합의	1	2					3	10
	단독				3	12	10	25	93
서울서부	합의		3					3	16

	단독				17	7	6	30	72
의정부	합의	2	4					6	28
	단독		3	1	2	27	26	59	182
인천지법	합의		1					1	83
	단독				8	11	14	33	341
수원지법	합의	5	3					8	115
	단독				10	17	24	51	536
대전지법	합의	3	8	2				13	72
	단독				6	13	14	33	337
대구지법	합의		2					2	65
	단독				26	25	23	74	630
부산지법	합의	3	6		4			13	78
	단독				44	10	9	63	409
광주지법	합의	2	3					5	60
	단독				1	52		53	321
합계	합의	25	65	5	5	0	1	101	993
	단독	0	6	2	136	213	158	515	3617

※ 서울중앙1은 차주민, 서울중앙2는 안균석 분석관임

○ 2008년 누계 현황

(단위: 건, 기간 : 2008. 1. 1. ~ 2008. 5. 22.)

	살인	성폭력	뇌물	마약	교통법 위반	특가 (도주)	계
합의	74	208	20	20	2	2	326
단독	0	20	4	382	682	505	1,593
누계	74	228	24	402	684	507	1,919

IV. 전문위원 업무 지원

1. 전문위원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 회의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9차	2008. 6. 30. 14:00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대상범죄의 선정 포함)
1팀 회의	제13차	2008. 6. 13. 17:00	○ 양형현황 분석
	제14차	2008. 6. 19. 10:30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 양형현황 분석
	제15차	2008. 6. 26. 14:00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 양형현황 분석

2. 전문위원 분석업무 지원

- 개요

선창민 통계분석 실무관을 전문위원 1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전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거나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된 양형자료 및 SPSS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위원이 원하는 통계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음
- 실시

전문위원 제1팀 제13차, 제14차 회의시 시행

☞ 참고로, 통계분석 실무관은 1팀 제8차 회의 이후 계속 참석 중

V. 전문위원 위촉계획

1. 개요

- 2008. 7. 17.자로 일부 전문위원(13명)에 대한 임기만료
 - 임기만료 전문위원 : 곽동우, 김용철, 김한균, 박형관, 서보학, 손철우, 이주형, 이천현, 이호중, 조국, 진선미, 최석윤
 - 곽동우, 조은경 전문위원은 임기 만료 후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 위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보고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전문위원의 임기 등)

- ①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촉계획

가. 원칙

-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계획을 수립함
 - ▶ 전문위원 연구업무의 연속적이고 차질 없는 수행 보장
 - 전문위원 연구성과를 토대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시기임
 -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 그 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성과와 활동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
 - ▶ 전문위원 선정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 여성 전문위원에 대한 배려

나. 위촉 방안

(1) 연임 위촉

- 김용철, 김한균, 박형관, 서보학, 손철우, 이주형, 이천현, 이호중, 조국, 진선미, 최석윤(11명)

(2) 신임 위촉

- 박영식 변호사
 - 곽동우 전문위원 후임
 - 여성 전문위원
 - ※ <별지2.> 전문위원 후보 프로파일 기재 참조

- 그밖에 전문위원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범죄·통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다. 추진 경과

- 2008. 6. 25.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위원 추천 의뢰
- 2008. 7. 1. 추천 회신(박영식 변호사)

라. 전문위원 구성(안)

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전문가	교수 /전문가
총괄팀	김소영	김현석	박형관	김용철	조국		
제1팀	김현석		이주형	진선미	서보학	이호중	김한균
제2팀	박형관	손철우		박영식	최석윤	이천현	

범죄유형별 죄명표

범죄유형	죄명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강간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강간상해)	
	성폭력범죄(강간치상)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	
	성폭력범죄(절도강간)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특수강간)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	
	준강간	
	준강간미수	
	준강간치상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	
	특수강도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강제추행)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심신미약자간음	
	강도	강도
		강도미수
		강도상해
		강도예비
강도치상		
준강도		
준특수강도		
특가법(강도)		
특가법(강도상해재범)		

범죄유형	죄명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방조
공갈	공갈
	공갈미수
	폭처법
	폭처법(공동공갈)
	폭처법(공동공갈)미수
	폭처법(상습공갈)
	폭처법(야간, 공동공갈)
	폭처법(야간, 공동공갈)미수
	폭처법(야간집단, 흥기공갈)
	폭처법(야간집단, 흥기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문서	공기호부정사용
	공문서변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공용서류무효
	공전자기록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변조공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특가법(도주차량)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뇌물	뇌물공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알선수재
	특가법(뇌물)
도로교통법	도교법

범죄유형	죄명
	도교법(무면허)
	도교법(무면허,음주)
	도교법(무면허,음주측정거부)
	도교법(손괴후미조치)
	도교법(음주)
	도교법(음주측정거부)
마약	마약류
	마약류(대마)
	마약류(마약)
	마약류(향정)
	유해화학(환각물질흡입)
무고	무고
방화	업무상실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물건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현존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현존건조물방화방조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배임	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특가법(알선수재)
	특경가법(배임)
	특경가법(사금융알선)
	특경가법(수재)
	특경가법(알선수재)
	특경가법(증재)
변호사법	변호사법
병역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부정수표단속법	부수법

범죄유형	죄명
사기	사기
	사기미수
	사기방조
	상습사기
	준사기
	컴퓨터사용사기
	특경가법(사기)
사문서	사문서변조
	사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위작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진단서작성
살인	강도살인
	과실치사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존속살해
	특가법(보복살인)
	폭행치사
상해	과실치상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존속상해
	중상해
	특가법(보복상해)
	특가법(야간, 공동상해)
	폭처법
	폭처법(공동상해)
	폭처법(상습상해)
	폭처법(야간, 공동상해)
	폭처법(야간, 상해)
	폭처법(야간집단, 공동상해)
	폭처법(야간집단, 흥기상해)
	폭처법(야간집단, 흥기상해)미수
폭처법(집단, 흥기상해)	
폭행치상	

범죄유형	죄명
선거법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농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손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폭처법
	폭처법(공동재물손괴)
	폭처법(야간,공동재물손괴)
	폭처법(야간,재물손괴)
	폭처법(야간집단,흥기재물손괴)
	폭처법(집단,흥기재물손괴)
위증	위증
	위증교사
장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알선
	장물취득
절도	상습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교사
	절도미수
	특가법(절도)
	특가법(특수절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처법(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조세	조세법
	특가법(조세)
지적재산권	상표법
	저작권법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처법(공동폭행)
	폭처법(야간,공동폭행)

범죄유형	죄명
	폭처법(야간집단, 흥기폭행)
	폭처법(집단, 흥기폭행)
	폭처법(특수폭행)
	폭행
협박	특가법(보복협박)
	특가법(특수협박)
	특수협박
	폭처법(공동협박)
	폭처법(야간, 공동협박)
	폭처법(야간, 흥기협박)
	폭처법(야간집단, 흥기협박)
	폭처법(집단, 흥기협박)
	폭처법(특수협박)
	협박
횡령	업무상횡령
	점유이탈물횡령
	특경가법(횡령)
	횡령

※ 약어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폭처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

■ 박영식(朴永植)

- 1965. 6. 1.생
-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9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2. 변호사 박영식 법률사무소 개업
- 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